

사학기관 감사증명서

1. 학교법인	① 학교법인명	삼육학원	② 이사장 성명	황 춘 광
	(3)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기동)		
	④ 전화번호	02-3299-5285	⑤ FAX	02 969-9421
	⑥ 회계연도	(2015)회계연도 :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2. 설치·경영 대학교	⑦ 대학교명	삼육대학교	⑧ 총장 성명	김 성 익
	⑨ 소재지	서울 노원구 화당로 815(광릉농)		
	⑩ 전화번호	02-3399-3636	⑪ FAX	02-3399-3455
	⑫ 입학정원	1,167 명	⑬ 기타 동 법인 설치·경영 학교명	
3. 설치·경영 대학교	⑦ 대학교명	삼육보건대학교	⑧ 총장 성명	박 두 한
	⑨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회경동)		
	⑩ 전화번호	02-3407-8561	⑪ FAX	02-2215-2380
	⑫ 입학정원	406 명	⑬ 기타 동 법인 설치·경영 학교명	

4.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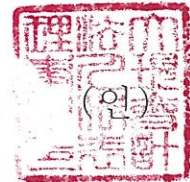
구 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요약
⑭ 감사의견 ⑮ 한정사항 ⑯ 특기사항 ⑰ 기타 ⑮ ⑯ 이외의 중점확인사항 관련 위반사항	1) 학교법인 삼육학원 및 그 설치학교인 삼육대학교와 삼육보건대학교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 운영성과 그리고 자금수지의 내용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사립학교법 제 31 조 제 4 항에 의거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017 년 4 월 14 일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송 재 현



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장 황춘광 귀하

첨부서류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별지 제 3 호 내지 제 3 의 4 호 서식) 및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교육부 고시 제 2014-55 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 1 호 및 제 2 호 서식), 외부감사결과 집계표 등(별지 제 4 호 내지 제 4 의 5 호 서식)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장 황춘광 귀하

2017년 4월 14일

본 감사인은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일반업무회계 및 동 법인이 설립한 삼육대학교와 삼육보건대학교의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 그리고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그 합산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합산운영계산서 및 합산자금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학교법인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비교표시된 2016년 2월 29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본 감사인이 감사하였으며, 본 감사인은 2016년 4월 17일자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시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일반업무회계와 동 법인이 설립한 삼육대학교와 삼육보건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 및 그 합산재무세표는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가 운영성리 그리고 지급수지 내용을 시학기권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6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송재한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7년 4월 14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학교법인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